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황창호	주민등록번호	730201 - *****
근무처 명칭	충남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314-83-00561
세대주 여부	[0] 세대주 [] 세대원	국적	(국적 코드: KR)
근무기간	20230101~2023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0]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0]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 시술비	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0	0	0	국세청 계	0	0	3,008,380	0	454,680	0	0	0	55,200	0	0
			0	0		기타 계	7,457,830	0	0	0	0	0	0	0	0	0	0
0	황창호		○			국세청	0	0	3,008,380	0	454,680	0	0	0	55,200	0	0
1	(근로자본인)					기타	7,457,830	0	0	0	0	0	0	0	0	0	0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1~3월		4~12월		1~3월	4~12월			
				1~3월	4~12월	1~3월	4~12월					
국세청 계	50,565,788	0	561,280	0	0	67,610	0	2,203,650	0	0		
기타 계	0	0	0	0	0	0	0	0	0	0		
국세청	50,565,788	0	561,280	0	0	67,610	0	2,203,65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7,697,720	전액		
연금보험료 계					7,697,720			
III.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3,046,09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4,411,740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보험료 계					7,457,830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0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0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0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0		
				30년 이상		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기타 대출	0				
15년 이상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10년 ~ 15년			기타 대출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특례기부금		기부금이월액	0	작성방법 참조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기부금이월액	0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0				
	기부금이월분(합계)			0				
IV.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0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0			
	투자조합 출자 등	2021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조합1		0			
			조합2		0			
		2022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조합1		0			
			조합2		0			
		2023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조합1		0			
			조합2	0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0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50,565,788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0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561,280				
	④ 도서·공연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0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67,610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2,203,650				
	계(①+②+③+④+⑤+⑥)			53,398,328				
우리시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0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0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무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감면기간 만료일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제출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종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12%,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9,000,000					
		연금저축		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9,000,000						
	의료비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3,008,380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0	100만원		15%		
			보험료 계			3,008,380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454,680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0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0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0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55,200				
		의료비 계			399,48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0	전액			
	취학전 아동(0명)		유치원·학원비 등	0	1명당 300만원		15%			
	초·중·고등학교(0명)		공납금	0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0명)		공납금	0	1명당 900만원					
	장애인(0명)		특수교육비	0	전액					
	교육비 계			0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0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0			15%,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0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0				15/100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0					15% 또는 30%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0					(2021년, 2022년의 경우 20% 또는 35%)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0							
기부금 계			0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0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0		30%					
		월세액	지출액	0	15% 또는 17%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황창호

2024년 01월 22일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2. 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